

가. 초·중·고·대학교 및 13세미만 어린이 통학용 차량(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최초 허가시 차령제한(6년)을 폐지(안 제103조제4호 다목 및 제103조제4호의2 다목)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사무 위임(안 제74조)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2020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824, Fax 044-201-5582)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0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씨엔에스이엔지주식회사 (허난향)

나. 전화번호 : 053-818-0033

2. 명칭 : CFT 트러스 부재를 이용한 장스팬 지붕용 합성 트러스(Smart Frame)

###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압축 좌굴 성능을 확보하고, 인장력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트러스 부재의 단면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장스팬 지붕용 합성 트러스에 관한 것으로, 트러스 부재는 각형 강관 내부에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압축 좌굴 성능을 확보하고, 각형 강관 단부에는 모르타르 내부에 정착되는 스티드 볼트를 결합하여 각형 강관의 인장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켰으며, 사재와 상하현재의 접합부에는 상하현재 면에 강관벽 스티프너를 용접 결합하여 접합부 성능을 확보하였다.

<범위>

박판의 각형 강관 내부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각형 강관 단부에 스티드볼트로 보강한 소형 CFT 트러스 부재를 사용하며, 강관벽 스티프너로 접합부를 보강한 장스팬 지붕용 합성 트러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8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관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17개소), 연안항(18개소)에 대한 항만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등 정비(안 제13조, 제15조)

- 1) 「항만법」 제9조제2항, 제6항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
- 2)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의 고시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
- 3) 「항만법」 제9조제2항,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
- 4) 「항만법」 제9조제6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변경